

의안번호	제 23 호
의결연월일	

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연월일	2004. 6. 18.

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4. 6. 18 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안이유

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으로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여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, 과태료 징수절차는 당해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34조제4항)있어 이 조례는 폐지 함.

4. 주요토의과제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기획담당관, 도시건축과장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04. 5 .24 ~ 6. 14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췌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
제144조(과태료)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·제4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가, 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,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)·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·징수한다.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제134조 (과태료의 부과) ①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·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.

사천시도시계획조례

제65조(과태료의 부과)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사천시 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